

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질의 답변내용(변경)

연번	지침 (페이지)	질의 내용	답변 내용(당초)	답변 내용(변경)
14	1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8조(제출서류)와 관련 PPT 자료에 대해 분량제한 및 사이즈(A3 or A4), 표지 및 제본 방법과 관련하여 기준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서에 대한 발표가 10분 이내이므로 적정 분량으로 작성하고 규격은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규격(A4)으로 작성(분량, 제본방법은 제한 없음) ○ 참고로, 공용컴퓨터로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되므로 글꼴, 특수문자, 동영상 애니메이션, 플래쉬, 소리추가시 구현이 어려울 수 있음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서에 대한 발표가 10분 이내이므로 적정분량으로 작성하고 규격은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규격(A4)으로 작성(분량, 제본방법은 제한없음) 참고로, 공용컴퓨터로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되므로 글꼴, 특수문자, 동영상 애니메이션, 플래쉬, 소리추가시 구현이 어려울 수 있음. ○ 발표자료는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특정 표기는 불가
67	3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사한 사업실적 등에 따르면 공원시설(주택건설 등)에 대한 사업 실적이나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실적을 말한다 고 되어 있는데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적의 의미는 시행실적과 시공실적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? ㉞ 비공원시설 사업 실적 중 주택건설(아파트) 실적도 포함되는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적은 제안 공고일 기준('19.11.13.) 최근 5년내 시공하여 준공한 사업실적으로 공공기관 및 인허가 기관에서 발급한 준공금액이 기재된 실적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인정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상 건설업 시공실적과 「주택법」 및 「신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시행실적도 인정 ○ 실적은 제안공고일 기준('19. 11. 13) 최근 5년내 사업실적으로 대한건설협회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급한 준공금액이 기재된 실적 증명서가 첨부되어야함.
102	4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기여시설 투자비 관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공기여시설 투자비는 사업시행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현금으로 납부해도 되는지? 아니면 특정시설을 설계/시공하여 기부채납해야 하는 방식인지 여부? - 사업시행자가 설계/시공하여 기부채납 해야 한다면 제안서 제출시 공원조성계획에 공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기여시설 투자비는 현금납부 및 시설설치 후 기부채납 하는 경우 모두 인정됨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례사업 대상 공원구역 내에 공공기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원조성계획에 포함 - 공공기여시설은 공원구역내·외에 자유롭게 설치 가능 - 공원구역내·외 공공기여시설을 설치하는 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기여시설 투자비는 현금납부 및 시설설치 후 기부채납 하는 경우 모두 인정됨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례사업 대상 공원구역 내에 공공기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원조성계획에 포함 - 공공기여시설은 공원구역 내·외에 자유롭게 설치 가능

연번	지침 (페이지)	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(당초)	답 변 내 용(변경)
		<p>기여시설을 포함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공기여시설은 공원시설부지 내 또는 공원 구역 밖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설치 할 수 있는지? - 공공기여시설 투자비에 토지매입비(공원구역 밖에 설치할 경우), 공공기여시설 공사비, 공공기여시설 설계/감리비 등 공공기여시설 설치를 위한 부대비용 전부를 공공기여시설 투자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? 	<p>우 시설설치에 투입된 비용(토지매입비, 조사, 설계, 시공, 감리비 및 부대비용)은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설치비용에 반영할 수 없고 수익률 산정시 반영가능(제안서작성지침 <서식 30>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구역 밖에 공공기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매입비, 조사, 설계, 시공, 감리 및 부대비용 일체는 공공기여시설 투자비로 인정됨.
107	42	<p>○ 주9) 공공기여도 등 관련 지역업체 참여 가점의 경우, 출자비율 49%이상 만점으로 지역업체에 대한 업종 구분은 없는 것인지?</p>	<p>○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상 지역 건설업종을 말하며 참여비율은 컨소시엄(spc)의 지분 출자율 기준임.</p>	<p>○ 「건설산업기본법」 및 「주택법」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종과 주택건설사업자 참여시 가점 인정</p>
110	42	<p>○ 주9) 공공기여도 관련 2) 공공기여시설의 설치 비용은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 설치비용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는?</p> <p>○ 주6) 공원조성 비용 평가시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인지? 그렇다면 <서식 30> 사업 현황 작성시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? 수익률 산정시 해당비용의 포함 여부는?</p>	<p>○ “102번” 답변내용 참조</p>	<p>○ 공공기여시설 투자비는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 조성비에 포함 되지않는 별도의 계획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</p> <p>○ <서식30>의 사업현황 작성시 총비용에는 포함하지 않으나, 수익률 산정시에는 공공기여시설 투자비를 반영하여 산정함.</p>